

이 사 회 의 사 록

사단법인 사랑나눔

사단법인 사랑나눔 정기이사회 의사록

1. 총회개최 공고일 : 2021년 1월 29일(금요일)
2. 회의일시 : 2021년 2월 23일(화요일) 11시~12시
3. 회의장소 : 춘천북부노인복지관 회의실-춘천시 충열로 124
4. 참 석 자 : 재적이사 9명중 5명 참석
5. 의 안 :
 1. 정관변경(안)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3.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의 건
 4. 회원자격세부규정-정회원(총회의결권)
6. 총회 내용
 - 가. 이은대 이사장이 2021년 2월 23일 11시05분에 의장석에 등단하여 참석 한 이사들을 소개하며 인사말을 하다.
 - 나.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전체 이사 9명중 이사 5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은대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다. 의사록 서기와 기명날인인 지명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한 서기로 이해진 회원을, 기명날인 인으로 참석한 이사 전원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하다.
 - 라. 의사일정 확정
 - 이사장이 법인의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 마. 전차 회의록처리
 - 이사장이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처리해 주기를 제안하니 이종성 이사가 동의하고 이수형 이사의 재청, 전원 원안대로 받기를 결의하다.
 - 바. 부의안건 심의
 1. 제1호 의안. 정관개정의 건
 - 이은대 의장이 아래와 같이 제1호 의안. 정관개정의 건을 상정하다.

1) 제1장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의 건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두며, 목적사업을 위해 훈련원, 교육원 및 분소 등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목적사업 대부분이 강원도 춘천시에 집중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법인의 지도 감독을 위해,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제1장 제3조 (개정안)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에 두며, 목적사업을 위해, 훈련원, 교육원 및 분소 등을 둘 수 있다.라는 개정안에 이종성 이사의 동의와 이수형 이사의 제청,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전원 거수로 찬성, 결의하다. 정기총회(2월23일)의 심의.의결후 사무실 이전을 다음 장소로 이전할 것을 가결하다.

이전의 장소 :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번길 84-8

이전연월일 : 2021년 4월1일

2) 제1장 제4조 (사업) 10항에 사업 추가의 건.

사랑나눔 강원지회에서 2020년 11월17일 국공립(시립)어린이집을 수탁받아 2021년 3월2일 개원예정으로, 이에 따라 정관 제4조 사업에 “어린이집 운영”을 추가해 줄 것을 춘천시청에서 요청하여 제4조 10항에 삽입하여, 아래와 같이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제1장 제4조10항 개정안

10항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 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니, 이수형이사의 동의와 이상덕이사의 제청,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전원 거수로 찬성, 결의하다.

3) 제3장 10조②항 (총회의 구분과 소집) 개정의 건.

제10조②항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로 되어있는데, 실제 12월 말 각 기관이 결산하고, 1월중 이사회를 열어 총회 상정안건을 논의한 후, 개최하려면 2월이 되어야 하기에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제3장 제10조②항 개정안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는 개정안에 오정열이사의 동의와 이종성이사의 제청, 전원 거수로 결의하다.

2. 제2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건

이은대 이사장이 아래와 같이 제2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다. 본 회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춘천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업장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본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사장직을 사임하기로 하고, 현재 본회 이사이고 사랑나눔 강원지회 지회장이신 이수형 이사에게 이사장직을 맡아, 본회 사업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는 지난 12월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오늘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10년간 이끌어 오신 이은대 이사를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이수형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할 것을 요청하니, 이수형 이사가 수락하기로 하다. 이에 모든 이사들이 박수로 승인하고 의사봉을 전달하다. 이에 따라 이사장 변경은 2021년 3월1일자로 대표권있는 이사직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기로 하다.

3. 제3호 의안.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의 건

이은대 이사장이 아래와 같이 제3호 의안. 대표권제한규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다. 2021년 3월1일자로 이사장 이은대는 대표권 있는 이사직을 중도 사임함에 따라 결원이 되었으므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선임이 법인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구한 바,출석이사 전원이 신중히 토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이사장 이수형(640917-1797911)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춘천시 동면 만천로 69.(105동1003호 KCC스위첸A)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4. 제4호 의안. 회원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의 건

이은대 이사장이 아래와 같이 제3호 의안. 회원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의 건을 상정하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이나 법인(단체포함)으로서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정 회 원 : 후원회비를 매년10만원이상 납부하는 자로서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의 승인을 받은 자**

2. 후원회원 : 본 회 사업에 찬동하여 후원회비를 납부 한 자.

이종성이사의 동의와 오정열이사의 제청, 전원 거수로 결의하다.

사. 폐회 선언

- 이사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이사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사단법인 사랑나눔 정기이사회 폐회를 12시06분에 선언하고, 서기가 의결사항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2021. 2. 23.

기록자: 이혜진 (인)